

# 다산 상생 윤리 규범

---

##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

1.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회사는 고용과정 및 근무 전반에 걸쳐 인종, 피부색, 민족성, 종교·신앙, 성별 및 임신 상태, 성적 지향,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연령, 장애(신체·정신적), 출신 국가(국적), 결혼 여부 또는 가족상태, 군복무 상태 및 전역 여부, 시민권 또는 이주 상태, 유전 정보, 노동조합 활동 여부, 그 밖에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채용·승진·교육·평가·급여·해고 등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며, 차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내부 고충처리 절차 또는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은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인사팀 또는 외부 익명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보장한다.
6. 회사는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직무 종사자(채용 담당자·면접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 인식 제고와

공정한 평가기준 확보를 강조한다.

---

### 제3장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4. 고객, 파트너, 협력업체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제4장 주주에 대한 존중

1.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회사의 주식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
  3.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 제5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및 법규 준수

1.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사업 및 영업활동 시 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무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4.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5.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6.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다.
7. 경쟁사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8. 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강제노동·계약노동·인신매매·노예노동을 일절 금지한다. 임직원은 자유의사로 근로에 참여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여권·신분증·노동허가증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보관·압류·강제 제출하지 않는다.
9. 법적 최소 연령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며, 청소년 고용 시 교육·보호 기준을 준수한다.
10.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도 동일 원칙을 요구하고, 점검·개선 절차를 운영한다.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조사하고, 필요 시 계약 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11. 회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29호, 105호), UN 글로벌 컴팩트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 제6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다산인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
2. 임직원은 각자가 다산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들로써 다산인의 명예를 지킨다.
3.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4. 임직원은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6.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7. 회사 내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유지해 나간다.
8.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10.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1. 직무수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12.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13. 임직원은 회사 외부로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의 보관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제7장 임직원의 윤리 행동 지침

1. 상생 윤리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윤리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①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③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④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⑤ 문서 조작 등 허위 보고

---

## 제8장 윤리규범의 준수

1.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징계에 관한 내용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다.
2.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감사는 임직원에게 의한 신고, 제보 등에 대하여 그 당사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제9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1. 회사의 지배구조는 독립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활동을 한다.
  - 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 ②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보호 정책을 실천한다.
  - ③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하며 내부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 ④ 대표이사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하게 한다.
  - ⑤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 **제10장 환경에 대한 책임**

1. 회사는 환경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환경 관련 세계적 추세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정책을 수립한다.

---

##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상생 윤리 규범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본 상생 윤리 규범은 2025년 09월 0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제2조 (자문 및 해석) 본 상생 윤리 규범 및 「다산 상생 윤리 지침」과 관련하여 해석에 갈등·의문이 있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산네트웍스 감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3조 (타 규정과의 관계) 본 상생 윤리 규범 및 「다산 상생 윤리 지침」은 회사 내 타 규정에 우선한다.

2025년 09월 01일